

국민 눈높이로 다가가는 열린 정부,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.



식품의약품안전처

## 식품의약품안전처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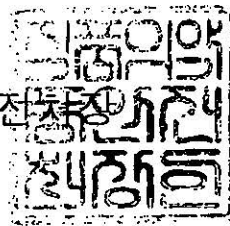
제목 단백질동화스테로이드제제 등 의약품 불법 유통 관련 협조요청

1. 귀 협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최근 우리처에서는 단백질동화스테로이드제제 등 의약품 불법유통 단속을 통해 동 의약품을 불법 수입·제조·판매한 수명의 보디빌딩 선수, 헬스트레이너 등을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.
3. 위 수사 과정에서 보디빌딩 선수 및 헬스트레이너들이 헬스장 등지에서 단백질동화스테로이드제제를 무분별하게 사용 및 취급(유통·판매)해 온 사실이 확인된 바, 귀 협회 소속 회원들 대상으로 의약품 오·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의 위험성 및 의약품 취급(유통·판매)의 위법성에 대한 홍보 활동 강화에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,
4. 아울러, 관련 대회 개최 시 도핑 강화 등 약물 복용 근절 대책 마련에도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.

※ 근육강화제로 오·남용되는 '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'는 남성 성선기능저하증과 유방암 등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으로서, 의사 처방없이 무분별하게 복용할 경우 무정자증, 전립선종양, 심부전, 간경화 등의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.

붙임 약사법 관련 규정 1부. 끝.
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

수신자 대한보디빌딩협회, 국민생활체육회

주무관

박일주

사무관

방성연

위해사범중앙 전결 2014. 2. 25.

조사단장 김진석

협조자

시행 위해사범중앙조사단-743 (2014. 2. 25.) 접수

우 158-87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(목동)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 별관3층 / http://www.mfds.go.kr

전화번호 02)2640-5074 팩스번호 02)2640-5050, / caesar07@korea.kr / 대국민 공개 5051

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로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니다.



식품의약품안전처

# 보도자료

배 포	2014.2.25(화)
담 당 과	위해사범중앙조사단(02-2640-5054) 의약품관리총괄과(043-719-2651) 첨단분석팀(043-719-5301)
단 장	김진석
과 장	이동희
과 장	김우성
사 무 관	방성연
사 무 관	채규한
연 구 관	조수열

## 근육 만들기용 불법 의약품 밀조·밀수 일당 적발 - 스테로이드제제 등 불법유통판매한 외국인, 헬스트레이너 등 구속 -

-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정승)는 지난 해 11월 ‘몸짱 만들기용 불법 스테로이드 의약품 유통’ 사건 조사과정에서 확보된 단서를 토대로 수사한 결과,
  - 중국에서 대용량 스테로이드 의약품을 들여와 국내에서 불법으로 제조 판매한 안모씨(남, 만 29세), 외국에서 스테로이드 제제를 밀반입하여 판매한 외국인 J모씨(남, 만 33세)와 민모씨(남, 만 40세)를 각각 「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」 과 「약사법」 위반혐의로 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.
  - 또한 이들로부터 불법 스테로이드 제제를 구입·판매한 전직 보디빌딩 선수 성모씨(남, 만 27세) 등 관련자 5명도 불구속 송치하였다.
- 수사 결과, 이들은 스테로이드제제 의약품을 불법 수입·제조한 이후 주로 인터넷 사이트와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거래하거나, 지인들 간의 직거래 방식으로 총 2,600여회에 걸쳐 17억여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.
  - 안모씨는 2011년 10월경부터 2014년 1월경까지 중국 등지에서 완제품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거나, 대용량 형태(bulk)의 의약품을 밀반입하여 용기에 나누어 담은 뒤, 별도 주문한 라벨과 홀로그램을 부착해 정상적인 제품으로 오인시키는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해

온 것으로 밝혀졌다.

- 헬스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 J씨는 2012년 4월부터 2014년 1월까지 태국을 수차례 드나들며 413회에 걸쳐 3억4천만 원 상당의 의약품을 불법 유통 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.
- 전직 헬스트레이너 민모씨는 2012년 1월부터 태국 거주 공급자로부터 국제우편을 통해 의약품을 조달하다가 물품이 반송되는 등 제품 구매에 차질이 발생하자, 같은 해 5월부터는 태국을 23차례에 걸쳐 드나들며 의약품을 직접 밀반입하는 수법으로 309회에 걸쳐 2억9천만 원 상당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.
- 참고로 이번에 적발된 불법 의약품은 잘못 복용할 경우 무정자증, 전립선종양, 심부전, 간경화, 고환위축, 발기부전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, 의사 처방 없이 무분별하게 해당 의약품을 섭취하면 부작용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.
- 식약처는 헬스 등 운동 시 손쉽게 근육을 만들려는 유혹으로 인해 잘못된 의약품 복용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며, 이번 사건이 의약품 오·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위험성을 알리고 불법 의약품 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.
- 아울러, 정부 차원의 의약품 불법 유통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관세청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, 보디빌딩 관련협회 등을 통해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·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.

붙임 : 약사법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조항

## [붙임] 약사법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조항

### ◆ 약사법 관련 조항

- 제31조(제조업 허가 등) ① 의약품 제조를 업(業)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0.1.18, 2013.3.23>
  - ② 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가 그 제조(다른 제조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한 의약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판매품목허가(이하 "품목허가"라 한다)를 받거나 제조판매품목 신고(이하 "품목신고"라 한다)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- 제42조(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) ① 의약품등을 수입하려는 자(이하 "수입자"라 한다)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. 허가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- 제44조(의약품 판매) ① 약국 개설자(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. 제47조, 제48조 및 제50조에서도 같다)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. 다만,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제61조(판매 등의 금지)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1.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 의약품이나 위조(僞造) 의약품
  2. 제31조제2항·제3항, 제41조제1항, 제42조제1항·제3항 및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조 또는 수입된 의약품
- 제93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07.10.17>
  1.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타인에게 빌려준 자
  2.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한 자
  3. 제23조제1항을 위반한 자
  4. 제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

아니한 자

5.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변경 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
  6. 제43조를 위반한 자
  7.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자
  8. 제44조제2항 제2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판매한 자
  9. 제53조제1항을 위반한 자
  10. 제61조(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 위반한 자
- ②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(併科)할 수 있다.

### ◆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조항

- 제3조(부정의약품 제조 등의 처벌) ① 「약사법」 제31조제1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제조한 사람, 그 정황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사람 및 판매를 알선한 사람 또는 진료 목적으로 구입한 사람, 「약사법」 제62조제2호를 위반하여 주된 성분의 효능을 전혀 다른 성분의 효능으로 대체하거나 허가된 함량보다 현저히 부족하게 제조한 사람, 그 정황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사람 및 판매를 알선한 사람 또는 진료 목적으로 구입한 사람,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사하게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람, 그 정황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사람 및 판매를 알선한 사람 또는 진료 목적으로 구입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. <개정 2011.6.7>
1. 의약품이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경우 또는 「약사법」 제53조에 따른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으로서 효능 또는 함량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: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
  2. 의약품의 가액이 소매가격으로 연간 1천만 원 이상인 경우: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
  3. 제1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: 사형,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
-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조, 위조, 변조, 취득, 판매, 판매를 알선하거나 구입한 제품의 소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.